

마포행복나눔푸드(뱅크)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 11. 26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. 11. 17.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1. 11. 2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

가. 제안이유

마포행복나눔푸드(뱅크)마켓1호점이 최초 민간위탁 이후 6년이 경과하고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여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 : 마포행복나눔푸드(뱅크)마켓1호점 운영사무
- 2) 민간위탁(재위탁) 내용
 - 위탁기간 : 5년(2022. 4. 1. ~ 2027. 3.31.)
 - ※ 최초 민간위탁일 : 2008. 4.18.
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
 - 기부식품 등의 모집·관리 및 제공,
 - 식품 등의 기부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및 후원개발
 - 그 밖에 기부식품 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등
- 위탁시설 개요
 - 위 치 : 마포구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 내(1층)
 - 규 모 : 매장 154.70 m^2 및 창고 63.05 m^2
 - 위치도



- 소요예산(2022년 예산 기준)
 - 예산액 : 195,629천원(시비 78,014천원, 구비 117,615천원)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195,629		
인건비	143,429	47,810천원×3명	-시비 71,714천원 -구비 71,715천원
운영비	50,600	4,217천원×12개월 ※관리비, 차량유지비, 공과금, 사업비 등	-시비 5,500천원 -구비 45,100천원
간판교체비	1,600	간판교체비용(1회성)	-시비 800천원 -구비 800천원

3) 세부추진일정

-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: 2021.11.
-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 : 2021.12.~ 2022. 2.
- 협약체결 : 2022. 3.

3. 검토보고 (박춘주 전문위원)

- 본 마포행복나눔푸드(뱅크)마켓1호점 민간위탁 사무는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34조 및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5조에 근거하여 2008년 4월 18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,
-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5조제2항에 의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,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(재계약)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 - 참고로 본 재위탁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5조제2항이 시행되는 2022년 1월1일 이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무의 재위탁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금번 회기에 제출됨.
- 따라서, 본 재위탁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동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.

※ 참고 자료 : 관련법규

[관련법규]

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[개정 2008.11.5, 2012.8.3, 2019.6.12., 2020.1.3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7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·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2.3] [[시행일 2017.2.4]]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[개정 2016.2.3] [[시행일 2017.2.4]]

③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5.6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[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]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